

議案番號	38
------	----

題目：'9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(案)

提出年月日：1995年 10月 日

提出者：大田廣域市長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 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,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
- 시에서 일괄하여 결산한 1994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용은 의회가 선임한 결산감사위원의 검사를 거치고
- 각회계별로 독립결산한 상수도사업등 5개공기업 특별회계의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㉠ 세입세출 결산현황

[1] 총괄(일반회계+특별회계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회계별	세입 결산액	세출 결산액	이월액	이월액내역				
				명시 이월	사 고 이 월	계속비 이월	국고보조금 집행잔액	세 계 잉 여 금
계	1,065,907	848,047	217,860	8,548	(25,852) 68,106	(49,191) 22,785	192	118,229
일반회계	584,040	527,239	56,801	8,198	(12,300) 13,625	7,550	192	27,236
특별회계	481,867	320,808	161,059	350	(13,552) 54,481	(49,191) 15,235	0	90,993

※ ()은 자금 없는 이월액임.

[2] 일반회계

○ 세입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계	지방세	세외수입	지방 교부세	지방 양여금	국고 보조금	지방채
584,040	355,114	84,305	31,852	23,575	21,546	67,648

○ 세출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의회비	일반 행정비	사회 복지비	산업 경제비	지역 개발비	문화 체육비	민방 위비	지원 및 기타
527,239	2,238	43,274	88,730	22,396	81,850	68,859	14,292	205,600

[3] 특별회계

○ 세출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회계명	세입 결산액	세출 결산액	이월액	이월액내용				
				명사이월	사고이월	계속비이월	세계잉여금	
계	481,867	320,808	161,059	350	(13,552) 54,481	(49,191) 15,235	90,993	
기 타 특 별 회 계	소계	35,616	18,767	16,849	0	373	0	16,476
	주택사업	5,780	3,188	2,592	0	0	0	2,592
	의료보훈 기금	8,446	8,440	6	0	0	0	6
	도시교통 사업	8,013	4,892	3,121	0	0	0	3,121
	대덕전문 연구단지	865	675	190	0	0	0	190
	토지구획 정리사업	12,512	1,572	10,940	0	373	0	10,567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소계	446,251	302,041	144,210	350	(13,552) 54,108	(49,191) 15,235
상수 사업	97,236	12,159	25,077	350	2,572	1,293	20,862	
하수 사업	62,519	43,786	18,733	0	4,183	12,894	1,656	
공영개발 사업	184,374	131,496	52,878	0	(13,552) 47,353	(49,491) 1,048	4,477	
지역개발 기금	67,675	50,153	47,522	0	0	0	47,522	
통 과 합 금	4,447	4,447	0	0	0	0	0	

※ ()는 자금없는 이월액임.

○ 대차대조표(공기업특별회계)

(단위 : 백만원)

회계별 구 분	계	상수도	하수도	공영개발	지역개발	통합공과금
자 산 총 액	1,034,754	230,752	266,451	362,912	174,639	0
부 채 총 액	552,842	92,802	44,846	260,139	155,055	0
자 본 총 액	481,912	137,950	221,605	102,773	19,584	0

○ 손익계산서(공기업특별회계)

(단위 : 백만원)

회계별 구 분	계	상수도	하수도	공영개발	지역개발	통합공과금
총 수 익	114,499	38,673	11,443	46,378	13,558	4,447
총 비 용	105,819	39,747	14,279	39,059	8,255	4,479
순 수 익	8,680	△ 1,074	△ 2,836	7,319	5,303	△ 32

② 기 금 현 황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종별	'93년이월액	'94년도		'94년말 현재액
		수 납 액	지 출 액	
12종	14,098	20,687	9,384	25,401

③ 채 권 현 황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'93년이월액	'94년도		'94년말 현재액
		발생액	소멸액	
계	15	834	849	0
일반회계	2	13	15	0
특별회계	13	821	834	0

④ 채 무 현 황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'93년이월액	'94년도		'94년말 현재액
		채무액	상환액	
합 계	455,468	157,439	81,037	531,870
일반회계	136,967	84,506	50,220	171,253
특별회계	318,501	72,933	30,817	360,617

⑤ 공 유 재 산 현 황

(단위 : 백만원)

재산의종류	'93년말 현재액	'94년도		'94년말 현재액
		증	감	
토지, 건물 유가증권	1,029,715	173,458	244,668	958,505

⑥ 물 품 현 황

(단위 : 백만원)

'93년말		'94년도				'94년말	
수 량	금 액	증		감		수 량	금 액
		수 량	금 액	수 량	금 액		
3,278	14,563	466	2,897	458	1,038	3,286	16,422

3. 본 문

별첨 1994년도 결산서(안) 내용과 같음

<별 책>

- (1)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
- (2)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
- (3)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
- (4) 19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
- (5) 19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보고서

[관 련 법 조 문]

◇ 세입세출 결산

○ 지방재정법 제41조(세입세출결산의 작성)

- ①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.
 - 1. 세 입 : 세입예산액, 징수결정액, 수납액, 불납결손액, 미수납액
 - 2. 세 출 : 세출예산액, 전년도이월액, 예비비사용액, 전용등증감액, 예산현액, 지출액, 이월액, 불용액

○ 지방공기업법 제35조 (결산)

- ① 관리자는 매사업년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.

◇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신청

○ 지방자치법 제125조 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○ 지방공기업법 제35조 (결산)

-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議案番號	39
------	----

題目：'94年度豫備費支出承認(案)

提出年月日：1995年 10月 日

提出者：大田廣域市長

1. 제안사유

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구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 예비비 지출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회계별	예산액	지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	사유
계		11,090	2,004	1,482	355	167	
일반회계		4,723	1,349	847	355	147	산불진화장비구입등
특별회계	소계	6,367	655	635	0	20	
	주택사업	2,499	100	99	0	-1	대출금 상환
	도시교통	1,138	82	78	0	4	버스전용차선제설시비용
	상수도사업	2,730	473	458	0	15	상수도본부 청사신축에 따른 입차료등

3. 본 문

○ 별첨 1994년도 결산서(안) 내역과 같음

<별 책>

- (1)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(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)
- (2) 199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

[관 련 법 조 문]

○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